

의원 후보자 등록신청 안내문

1. 신청기간

- 2021. 2. 5(금) ~ 9(화) (5일간)

2. 신청 구비서류 <선거규정 제22조 제1항, 제2항>

- 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선거권자 5인 이상의 추천장 (별지 제7호 서식)
- 법인의원의 임원 중 별도의 대표자(대리의원) 선정 신고서 (별첨 양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3. 신청서류 접수처

- 화성상공회의소 제11대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화성상의 3층)

4. 참고사항

가.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제한

□ 상공회의소법 제23조 (의원 등의 자격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화성상공회의소 정관 제37조 (의원 등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 (1. ~ 7.) “상공회의소법 내용과 동일함”

나.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화성상공회의소 정관 제63조 (의결권 등의 정지)

- ① 본 회의소는 회비를 체납한 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그 체납기간 중 의원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며, 의원후보자 등록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화성상공회의소 선거규정 제12조 (피선거권의 제한 등)

- 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자격제한>
 1. 선거권이 없는 자
 2. ~ 7. “상공회의소법 및 정관 상의 자격제한 내용과 동”
- ②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다. 법인의원의 임원 중 별도의 대표자(대리의원) 선정 신고

□ 상공회의소법 제26조 (법인의원의 대표자)

-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 (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 화성상공회의소 정관 제39조 (법인의원의 대표자)

- ①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 (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37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본 회의소의 의원
 3. 본 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였을때 지체 없이 본 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안내 - 필요 서류는 화성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서 수취. 끝.